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상품설명서

(2024.07.01)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 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 상 품 명 :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 ▶ 상품특징 :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이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자산관리기관)					
대상예금	정기예금					
가입좌수	제한없음					
가입금액	최소 1원 이상, 최고 가입금액 제한 없음					
가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6개월 ■ 디폴트옵션형^{주)} 의 계약기간은 3년 <small>주) 퇴직연금(DC/IRP)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제도</small>					
기본이율 (연%, 세전)	■ 기본이율 (2024.07.01 기준)					
	구 분	3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확정급여형(DB형)	3.05	3.10	3.43	2.90	2.75
	확정기여형(DC형)	3.05	3.10	3.43	2.90	2.75
	디폴트옵션형(재예치형/만기상환형)					2.80
<small>*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small>						
우대이율	해당사항 없음					
최고이율	계약기간별 기본이율과 동일					
이자계산방법 (연%, 세전)	원금 X 연이율 X 예치일수/365 (단리식)					

구 분	내 용										
자동재예치	<p>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p> <p>(1) 신규일 또는 만기일전에 거래처가 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재예치되며,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재예치 됩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p> <p>(2)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등에 고시된 이율을 적용 하며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 로 합니다.</p> <p>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및 개인형(기업형) 퇴직연금(IRP)</p> <p>(1)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의 3에 의해 만기일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 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까지 재예치됩니다.)</p> <p>(2)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상품과 함께 포트 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 약정이자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 일하게 재예치됩니다.</p> <p>(3) 자동으로 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하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p>										
분할해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하며,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자별로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에는 분할해지하는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중도해지이율 (연%, 세전)	<p>■ 중도해지이율</p> <p>- 가입일 당시 기본이율 X 적용율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최저이율은 0.01%)</p> <p>※ 적용율</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입기간</th> <th>적용율</th> </tr> </thead> <tbody> <tr> <td>6개월 미만</td> <td>50%</td> </tr> <tr> <td>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td> <td>70%</td> </tr> <tr> <td>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td> <td>80%</td> </tr> <tr> <td>11개월 이상</td> <td>90%</td> </tr> </tbody> </table>	가입기간	적용율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7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80%	11개월 이상	90%
가입기간	적용율										
6개월 미만	50%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7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80%										
11개월 이상	90%										
특별중도해지	<p>다음의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특별중도해지사유 (9), (10),(11) 의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p> <p>■ 특별중도해지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의 사임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 중도인출의 경우 (8)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 및 급여이전 (9)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0)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취소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인 경우												
■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경과기간</th><th>적용율</th></tr> </thead> <tbody> <tr> <td>6개월 미만</td><td>3개월제 이율</td></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td>6개월제 이율</td></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td>1년제 이율</td></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td>2년제 이율</td></tr> <tr> <td>3년</td><td>3년제 이율</td></tr> </tbody> </table>	경과기간	적용율	6개월 미만	3개월제 이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6개월제 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제 이율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제 이율	3년	3년제 이율
경과기간	적용율												
6개월 미만	3개월제 이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6개월제 이율												
1년 이상 ~ 2년 미만	1년제 이율												
2년 이상 ~ 3년 미만	2년제 이율												
3년	3년제 이율												
구 분	내 용												
만기후이율	없음 (해당 상품은 만기후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 (단,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담보제공 가능)												
원금 또는 이자지급 제한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계약의 해지	영업점,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												
위법계약 해지권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와 관련한 추가비용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 요구권	<p>■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정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p>■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p>												
예금자보호여부	확정급여형(DB) 에 운용되는 정기예금	비해당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 (IRP)에 운용되는 정기예금	해당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이 상품은 경남은행 고객기획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00-8585, 1588-8585)**,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부(080-590-828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n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